

행 정 자 치 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구군

관 련 자 양구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0. 2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추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선행한 후 건축허가(추인)가 가능하다.

양구군 ○○○○과는 ○○읍 ○○리 000외 1필지에 건축주 ○○○가 단독주택 102.55㎡를 건축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2008. 5. 20.과 2008. 6. 23.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토록 시정 명령하였고,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8. 20. 이행강제금 1,997,800원을 최초 부과하고 2009. 11. 2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후 2010. 1. 12. 이행강제금 3,832,000원을 재차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은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3. 12. 17. 건축주가 건축신고(추인) 신청을 접수하자 지적현황측량성과도(2013. 7. 13.)상 추인대상 건축물의 외벽 일부가 인접필지 ○○리 000-0(구거/국(건설교통부))에 약 50cm 저축되었음을 확인하여 2014. 1. 27. 건축신고서를 반려하였으나

양구군 ○○○○과에서는 건축신고서 반려 후 확인된 불법사항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